#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28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허종식 · 노종면 · 이훈기

유동수 · 정일영 · 서영석

김교흥 • 박찬대 • 김동아

박성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비수도권 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 법률 제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 100만 제곱미터 이상
- 2. 시 · 도지사: 100만 제곱미터 미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	<u>•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u>
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u>하 "시·도지사"라 한다)는</u>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	
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	
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u>다음 각 호의 구분에</u>
	따라 개발제한구역
<u>&lt;신 설&gt;</u>	1. 국토교통부장관: 100만 제곱
	<u>미터 이상</u>
<u>&lt;신 설&gt;</u>	2. 시·도지사: 100만 제곱미터
	<u>미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